

WTO體制의 反덤핑 關稅制度와 韓國의 對應方案

金 蓉 奎

1948년 GATT발족 이래 8차에 걸쳐 이루어진 세계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 다자간 무역 협상인 UR협상의 결과로 WTO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WTO체제는 GATT와 다르게 사법기능을 갖는 세계적인 조직 기구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간의 무역분규를 얼마나 줄일지 의문이다. 특히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 반덤핑 관세제도는 무역 당사자국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국제무역에 있어 국가간 또는 개인간 덤프 거래에 의한 무역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수출 주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주요 덤프제소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덤핑 관세제도의 이해 부족과 대외적 방어의 미비와 신진학개발의 부재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덤프 및 반덤핑 관세의 개념 정의 및 덤프의 발생 원인과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비판 및 찬성 이론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아울러 금번에 개정된 반덤핑 신협약(GATT 1994 제 6조)과 종전의 반덤핑 협약(GATT 1947 제 6조의 반덤핑 협약 1977)의 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의 반덤핑 현황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경제 이론적 배경과 WTO시대의 신반덤핑 협약과 세계 및 한국의 반덤핑 관세제도 발동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정부 차원과 수출기업 차원에서 제시해 보았다.

1. 序 論

WTO(세계무역기구)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출범은 국제무역에 연관된 제반 문제점을 들을 범세계적 측면에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통상적으로 WTO는 종래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비하여 사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보다 더 강화된 무역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이 과연 국가간의 무역 분규를 얼마나 줄여 나갈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 중에서 반덤핑 관세제도와 관련된 WTO 협정은 주요 관심 부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무역에 있어 국가간 또는 개인 기업 간 덤프거래에 의한 무역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그 폐해도 심각하였다. 특히 한국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수출주도정책에 따라 외국과의 수출에 반덤핑 관세제도가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5위의 덤프 제소국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덤핑 관세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대외적 방어의 미비 및 새로운 전략개발의 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기초로 덤플링의 경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개정된 반덤핑 관세 협약을 종전의 반덤핑 관세 협약과 비교하였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반덤핑 조치 현황과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및 발동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反덤핑 關稅의 經濟理論的 背景

2.1. 덤플링 및 反덤핑 關稅의 定義

덤플링(dumping)이란 개념은 GATT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국의 생산자가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출하여 상대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 또는 동일 산업에 실질적인 지연(material retardation)을 일으켰을 때 덤플링이 발생한다. 이 때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생산비에 판매비 및 이윤을 타당하게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반덤핑 관세제도는 위의 개념 정의에서처럼 덤플링이라고 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국은 정상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처럼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라고 한다. GATT가 정의한 정상가격 이하의 상품판매는 한 국가내에서 종종 발견되는 생산자 행동이다. 한 국가내에서 가격 차별화에 따른 상품 판매 행위를 불공정 거래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이하로 책정될 경우 수입국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간주되어 수입국은 해당거래에 대해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기업의 상품가격 결정이 국내에서 결정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

2.2. 反덤핑 關稅賦課에 대한 賛・反 理論

여기에서 반덤핑 관세법을 반대하는 경제학자들과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근거를 들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반덤핑 관세법을 비난하는 경제학자들은 덤플링으로 인하여 수출국 기업이 수입국에 상품을 싼 가격으로 판다면 그 이유가 수출국의 가격 차별화 때문이건 수출국가의 보조금 때문이건 간에 수입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Bhagwati(1990)는 반덤핑 관세법을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의 산물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즉 그는 덤플링을 불공정 무역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가 1980년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국제 경쟁 우위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불공정 무역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내 기업이 단순히 경쟁을 이기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여 반덤핑관세법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론적으로 찬성하는 Stewart(1991)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법이나 상계관세법이 다량의 상품생산자인 수출기업의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 행위, 수출국의 자국 시장 보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특혜 등의 요소로 인한 순수한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와 관계없이 생긴 인위적 비교 우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덤플링은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로부터 비교 우위가 없는 국가로 생산 기지를 바꾸게 해서 국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게 되어 결국 국제무역을 왜곡시킨다고 보는 견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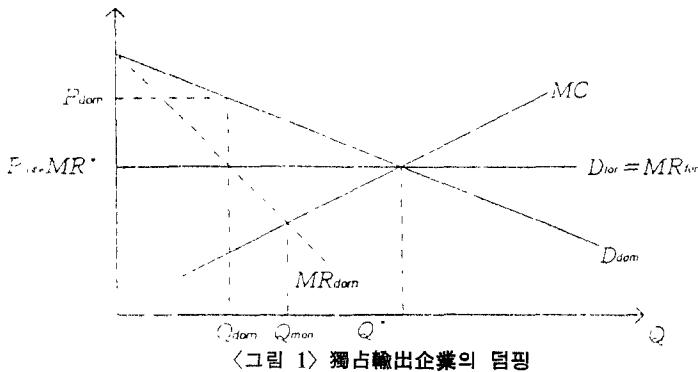
2.3. 덤플링의 發生原因

덤플링의 발생에 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다.

Carlton and Perloff(1994)는 덤플링을 약달적 덤플링(predatory dumping), 가격 차별화(price discrimination), 상호 덤플링(reciprocal dumping)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Salvatore(1993)는 덤플링을 지속적 덤플링(persistent dumping), 약탈적 덤플링, 산발적 덤플링(sporadic dumping)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덤플링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Viner(1923)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분류의 기초는 시간의 연속성과 덤플링 동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덤플링 분류를 살펴보면, 재고를 임시로 처리하기 위한 수출은 산발적 덤플링으로 분류되며, 수입국 경쟁 기업들의 시장 탈퇴를 유도하거나 잠재적 경쟁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덤플링은 약달적 덤플링으로 분류되고, 생산 시설을 완전히 가동하면서 자국의 상품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고 외국 시장에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가격 차별화는 장기적 덤플링으로 분류되어 진다.

Viner(1923)는 덤플링이 산발적,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의 주된 이론적 고찰은 지속적으로 덤플링을 발생시키는 가격 차별화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덤플링의 발생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기존의 가장 대표적 모형이며 대부분의 교과서에 소개된 Viner의 가격 차별화에 의한 덤플링 발생 모형을 설명코자 한다. Viner(1923)는 한 국가에서 독점적 시장을 유지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높은 상품가격을 유지하면서 국외 시장에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덤플

핑이 발생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그의 덮핑 모형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옹호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덮핑 발생 원인이 수출 국가의 독점 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출국가가 독점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순수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상품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역 장벽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국내 수요곡선은 D_{dom} 국내 한계수입은 MR_{dom} 로 표시되어 있고 한계비용은 MC 로 표시되어 있다. 국내의 수요곡선 D_{dom} 의 높이는 독점기업이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이렇게 ‘우하향’ 하는 수요곡선 때문에 이 기업의 국내 한계수입 (MR_{dom} 의 높이)은 국내 가격 (D_{dom} 의 높이)보다 작도록 그려져 있다. 완전경쟁적인 외국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상품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며 D_{for} 로 표시되어 있다. 국외 판매가격과 그 크기가 같은 국외 한계수입은 MR_{for} 로 표시되어 있다. 먼저 이 기업에게 있어서 ‘외국에서의 한계수입=국내에서의 한계수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이는 MR_{for} 와 MR_{dom} 이 만나는 점에서의 한계수입이 되므로 그 높이는 MR^* 가 된다. 이제 기업은 한계비용이 이 한계수입과 같도록 총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총생산량이 Q^* 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MR^* 를 보장하는 국내 판매량은 Q_{dom} 로 표시되어 있다. 국외에서는 어떤 판매량에서도 MR^* 를 보장받지만 Q^* 가 적정 총생산량이므로 $Q^* - Q_{dom}$ 만큼을 국외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그러나 국외에서의 판매가격은 고정된 MR^* 이지만 국내에서의 시장가격은 국내의 한계수입보다 큰 P_{dom} 에서 결정되므로 이러한 기업은 가격 차별화에 의한 덮핑 수출을 하게 된다. 적판적으로 볼 때 수출기업의 가격 차별화 동기는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이윤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Q^* 만큼 판매하고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덮핑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내에서의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국의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한계수입은 국내에서의 한계수입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 판매를 줄임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독점기업이 국의 판매를 할 수 없을 경우라면 국내의 독점 생산량은 ‘국내에서의 한계수입=한계비용’을 만족시키는 Q_{mon} 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국의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더욱 줄이고 대신 국의 판매량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어 국내 생산량은 더욱 작은 Q_{dom} 이 되고 P_{dom} 과 같은 높은 독점가격이 국내에서 형성되게 된다.

3. 改定된 反덤핑 關稅協約과 從前의 協約內容의 相互比較

반덤핑 관세 협약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는 일정한 조건 하에 GATT의 무차별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GATT 1947 제 6조가 있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준칙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 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있다. 이 협정을 표본으로 하여 선진 각국들은 반덤핑 관세법을 제정하였고 GATT의 원칙 제 6조의 형식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의 GATT 반덤핑 관세 협약은 규정 내용이 애매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각국이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또한 조사 절차가 극히 까다롭고 복잡하며 기술적이어서 각국의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의 반덤핑 관세 협약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 UR 반덤핑 관세 협약은 UR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 14일에 타결되어 WTO의 발족과 함께 1995년부터 반덤핑제도에 대한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개정된 반덤핑 관세 협약(GATT 1994)과 종전 협약(GATT 1947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1979 반덤핑 협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상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1. 덤플인 認定上의 問題

3.1.1. 正常價格(normal value)의 認定範圍

종전 협약에서는 덤플인을 산정과 관련하여 정상가격 인정 범위에 대하여 수출국내의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채택하는 경우 수출국내의 판매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각국에 의한 자의적 적용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협약에는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국내의 국내 판매 수량이 수입국내 판매 수량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충분한 규모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5% 미만일지

라도 수출 가격과 비교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2. 原價以下 販賣時 正常價格 認定問題

종전 협약에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만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협약에는 덤핑률의 산정시에 비교 가격이 되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 또는 제조국 수출가격이 원가 이하의 판매인 경우에도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이거나 덤핑 조사 대상 품목의 20% 미만인 경우에 원가 이하의 판매로 인한 총 비용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개발이나 설비 투자액이 큰 ‘하이테크’ 제품 등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시작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적은 초기 (start-up)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일시적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단계적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전 협약에는 이를 무시하였으나 개정 내용에는 생산개시기동 (start-up operation)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대상 기간중의 비용 조정이 인정된다.

3.1.3. 構成價格算定期 實際發生費用의 反映

여기서 구성가격이란 생산자의 국내판매가 없거나 그 국내 판매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신으로 생산비와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국내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의 산출가격을 의미한다. 개정된 협약에는 이윤으로서 부가액 산출 기준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 부류에 속하는 상품 판매 이윤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의 경우 EU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생산원가의 12%, 이윤을 총원가의 8%로 일괄 책정하여 문제점이 많았으나 개정 협약에는 구성가격의 산정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와 이윤은 조사 대상자의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택 할 수 있다.

① 해당 국내에서 동일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투입된 비용에 의한 산정, ② 해당 국내에서 기타 생산자가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에 투입한 비용의 가중 평균 금액에 의한 산정, ③ 해당 국내에서 기타 생산자가 동일물품 판매시에 발생하는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3.1.4. 正常價格과 輸出價格의 比較基準 明瞭化

종전 협약에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은 동일한 거래 단계 즉, 공장인도단계 (ex-factory 또는 ex-works)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시점에서의 판매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마찰의 소지가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중 평균한 국내 정상 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과다한 덤핑을 산정하게 되었고 개별거래시 ⊖의 덤

핑률을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협약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에 있어서 두 가지 가격을 모두 각종 평균한 가격 또는 모두 개별거래가격으로 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1.5. 換率適用基準의 明示

종전협약에는 환율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환율적용 시점이 애매모호 하였으나 개정협약에서는 화폐단위의 변경시에는 판매 시점의 환율을 적용도록 하였으며 판매시점은 일반적으로 계약, 구매 주문, 주문 확인, 상품송장 작성을 판매 계약이 완료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3.1.6. 新規輸出者에 관한 規定設置

신규수출자의 반덤핑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미국, EU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종전협약의 명료성을 위해 신규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기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다른 덤핑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7. 垂핑 調査終結基準의 明示

종전협약에는 단순히 덤피ング률이 작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은 덤피ング률 0.5% 이하, EU는 시장 점유율 1% 이하인 경우에는 덤피ング조사가 종결되도록 자의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개정협약에는 최소기준(demiminis) 덤피ング률을 2% 미만으로 하고 특정국의 덤피ング 수입량이 동종물품 총 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수입국내의 동종 물품 수입의 3% 이하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동종물품의 수입의 합계가 7% 미만 경우에도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 종결도록 하였다.

3.2. 產業被害認定上의 問題

3.2.1. 垂핑과 被害의 因果關係

피해 요건에 있어 종전 규정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수입국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덤피ング도 피해의 인과관계를 고려치 않고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협약에서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과관계를 수입국이 명백히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다음의 사항은 제외되어야 한다.

- ① 덤피ング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 ② 수요 감소, ③ 소비 형태의 변화, ④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상호경쟁, ⑤ 기술개발, ⑥ 국내 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의 생산성 등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제외되어야 한다.

3.2.2. 產業被害의 累積的 評價規定의 明示

종전협약에서는 2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덤피ング률이나 수입수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누적 평가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피해 판정의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경미한 덤피ング률이나 소량 수출국가를 누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누적 평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① 각국 수입물품의 최소덤핑률 (2%) 이상인 경우와 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② 앞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품이 국내 동종물품과 상호 경쟁하는 경우에는 누적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3.2.3. 被害憂慮結定時의 考慮要素 明示

개정전 협약에서는 실질적 산업 피해의 우려(a threat of material injury)에 관한 결정시 조사 당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협약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장래 피해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덤피ング 수출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① 덤피ング 수입의 현저한 증가율, ② 수입품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부, ③ 조사 대상물품의 재고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3. 僂賈調查節次 및 課稅上의 問題

3.3.1. 僂賈 提訴資格의 問題

개정된 협약에서는 덤피ング제소는 50%의 찬성이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산업의 제소 지지를 요전으로 한 것으로서 제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지의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국내 산업의 50%로부터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것을 이유로 때로는 제소를 수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협약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덤피ング제소에 대한 지시 또는 반대의 정도를 조사한 후에 찬성이 50% 이상이고, 동종제품 생산액이 25% 이상인 경우에 덤피ング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도 제소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3.3.2. 不充分한 證據에 의한 調查開始

종전 협약에서는 관계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덤피ング의 존재유무, 국내 산업의 피해 및 이를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히 있는가를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충분한 증거없이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정된 협약에서는 피해의 인과관계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이 “정확성 및 적

합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조사당국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있다.

① 조사 당국은 조사 개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조사 제출된 증거의 명확성 및 적합성(accuracy and adequacy)을 검토하고, ②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한 제소가 없으면 개시될 수 없고, ③ 조사개시의 결정이 없는 한 조사 개시 요청은 공개 되어서는 안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서면 신청 접수 후에도 조사 개시 이전에 관련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3.3. 調査對象品目の 不當한 擴大

개정된 협약에서는 반덤핑관세는 덤플링 조사에 의거하여 덤플링이라고 인정된 상품에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당해제품의 동종상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원래 새로운 조사없이는 덤플링 및 덤플링에 의한 피해를 알 수 없는 차세대 신제품에 대해서까지도 조사대상품목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협약에서는 동종물품이란 고려대상인 물품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물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4. 未調査企業 및 新規輸出者 最高稅率의 適用

지금까지 EU는 미조사기업 및 신규수출기업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이나 신규 수출 기업의 수출 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업 중의 최고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규정에서는 미조사기업의 과세는 조사대상 기업의 가중 평균 세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참여자에 대하여 미리 예탁금을 징수하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덤플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3.3.5. 調査終結을 위한 덤플-마진 및 市場占有率의 最小基準(demiminis)

개정된 내용에는 덤플-마진이나 시장 점유율(덤플 수입 규모)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은 덤플-마진율이 0.5%, EU는 시장 점유율이 1% 이하인 경우에만 덤플 조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미국의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제소件의 경우, 덤플-마진율 0.5% 이하인 경우에만 조사가 종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협약에서는 최소기준(demiminis) 개념을 도입하여 덤플-마진율 2% 미만이거나 개별국가로부터의 덤플 수입량이 수입국내 시장에서 3%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때는 조사가 즉시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너무 긴 課稅期間의 問題

3.4.1. 行政再審查(administrative review)의 遲延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서는 과세의 재심사는 조사개시후 1년 이내에 최종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있다. 미국상무성은 1990년에 절차를 신속화시켰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재심사 절차의 집행이 지연되어 있다. 또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과세의 환급 및 철회의 절차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협약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소조사는 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4.2. 時限附條項(sun-set clause)의 缺如

종전 규정에서는 EU,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은 반덤핑 관세가 일정 기간 경과후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소위 시한부 조항(sun-set clause)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 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에 있어서 3년간 덤플링 수출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재심사 요청이 4년간 없었던 경우에 과세가 취소되는 제도가 있지만 행정 재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협약에 의하면 반덤핑 관세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덤플링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범위에 한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스스로의 발의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과세 계속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반덤핑 관세가 과세 개시시(또는 재심사)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 당사자가 소멸 전에 재심사를 하여 과세 계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심사시는 재심사 개시후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遷廻防止措置 適用上의 問題

3.5.1. 輸入國 遷廻(輸入國內 單純組立)를 통한 遷廻dumping

현재까지 GATT 1947의 반덤핑 협약에는 수입국 우회에 대한 우회dumping 규정이 없으나 미국 및 EU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국 또는 제3국에 생산 공장을 이전하여 거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우회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새로운 조사를 하지 않고 당초의 반덤핑 관세를 확장·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EU의 반덤핑 규칙에서도 미국과는 상이한 우회 방지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UR협정 초안에는 이러한 우회dumping 규제가 포함되었으나, 협상 참여국 간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여 추후 반덤핑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3.5.2. 제3國 遷廻(제3國組立) 및 原產地採集(Country Hopping)을 통한 遷廻dumping

지금까지 GATT 1947의 반덤핑협정에는 규정이 없고 미국, EU의 반덤핑규칙에 우회 방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운용상에 문제점이 많아 개정협약에서는 수입국의 우회 역법화처럼 추후 반덤핑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4. 反dump 關稅制度의 發動現況

4.1. 世界各國의 反dump 措置現況

세계 각국의 반덤핑 조사 현황을 보면 〈表 1〉에서와 같이 지난 8년 동안(1985~1992년) 총 1,040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반덤핑 조사는 미국이 29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호주, EU, 캐나다 등의 순으로 그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4개국의 조사 사례를 합하면 총 863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4개국이 거의 대부분의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제소 대상 국가별로 구분하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474건으로 46%이며, 나머지 54%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297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表 2〉에서처럼 반덤핑제소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1980년대 이후

〈表 1〉 世界各國의 反dump 調査現況(1985~1992)

被提訴國 提訴國	合計	先進國	東 유럽	中南美	阿中東	아시 開發國
계	1,040(100)	474 (46)	132 (13)	107 (10)	30 (3)	297 (29)
美國	298 (29)	131 (44)	30 (10)	45 (15)	12 (4)	80 (27)
歐洲	278 (27)	144 (52)	15 (5)	22 (8)	10 (4)	87 (31)
EU	159 (15)	42 (26)	46 (29)	14 (9)	6 (4)	51 (32)
캐나다	128 (12)	73 (57)	13 (10)	10 (8)	1 (1)	31 (24)
멕시코	63 (6)	37 (59)	0 (0)	10 (16)	0 (0)	16 (25)
뉴질랜드	31 (3)	7 (23)	0 (0)	0 (0)	0 (0)	24 (77)
풀란드	24 (2)	24 (100)	0 (0)	0 (0)	0 (0)	0 (0)
브라질	14 (2)	3 (21)	3 (2)	3 (21)	0 (0)	5 (36)
핀란드	13 (1)	2 (15)	11 (85)	0 (0)	0 (0)	0 (0)
스웨덴	11 (1)	2 (18)	9 (81)	0 (0)	0 (0)	0 (0)
韓國	9 (1)	8 (89)	0 (0)	0 (0)	0 (0)	1 (11)
印度	5(0.5)	1 (20)	1 (20)	3 (80)	0 (0)	1 (20)
오스트리아	4(0.4)	4(0.4)	0 (0)	0 (0)	0 (0)	0 (0)
日本	3(0.3)	3(0.3)	0 (0)	0 (0)	1 (33)	1 (33)

資料 : GATT, *Basic Instruments and Selected Documents*, various issues.

註 : 함께 세로칸의 ()는 전체 조사건수 중 해당국의 비율, 기타 칸의 ()는 해당국 또는 전체의 피해소국 비율.

〈表 2〉 年度別 反덤핑提訴 現況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호 주	8	20	79	80	53	61	62	21	16	21	—	—	421
미 국	21	13	58	49	37	76	64	15	39	23	27	57	479
캐나다	25	24	79	26	27	37	16	32	15	13	10	12	316
E U	16	34	33	30	39	352	12	32	29	14	43	—	314
멕시코	0	0	0	0	0	0	0	17	10	3	—	—	30
핀란드	2	0	0	0	1	0	0	5	5	2	—	—	15
한 국	0	0	0	0	0	0	3	1	0	1	—	—	5
기 타	2	1	0	1	1	2	0	0	10	8	—	—	25
계	74	92	249	186	158	208	157	123	124	85	—	—	1,605

資料 : Reports to the GATT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 1980~1989

〈表 3〉 反덤핑提訴 措置現況(1980. 7~1989. 7)

	총 조 사 건 수	공정판정 (반덤핑관세부과, 가격인상약속 등)	기 타 (무협의, 소취하 등)
호 주	469	214	265
미 국	465	195	270
캐나다	286	165	121
E U	333	220	113
기 타	79	26	53
계	1,632	820	812

資料 : 〈表 4〉와 같음.

註 : 1) 미국과 캐나다는 1980년 7월~1991년 6월 사이의 건수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WTO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가 변할 것이라고 쉬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주된 이유는 우선 세계 각국이 WTO체제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관세등 차국 산업 보호수단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국제 규범이 인정하는 반덤핑제도의 활용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表 3〉과 같이 세계 주요 각국의 반덤핑 제도에 따른 판정결과가 지난 9년 동안(1980~1989) 반덤핑 관세부과 등의 공정판정이 820건 무협의나 소취하 등의 기타 판정이 812건으로 집계되었다. 〈表 4〉에서 나타나듯이 우루파이 라운드 이후에 양허된 관세의 품목수는 선진국의 경우 94%에서 99%로 늘어나고, 개발도상국은 15%에서 58%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양허관세율 역시 선진국은 평균 6.3%에서 3.9%로 39%가 낮아지고 개도국은 15.3%에서 12.3%로 20%가 인하되게 된다. 결국 양허관세율의 인하와 양허대상 품목의 증대는 관세의 산업 보호 기능이 약화됨을 의미하고, 이는 곧 세계 각국이 반덤핑 혹은 세이프가드 등의 산업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서만이 수입의 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表 4〉 우루파이 라운드 協商에 따른 國家別 關稅亮許 品目數 및 稅率變化

구 分	국 가	수 입 량 (백만불)	양 허 품목비율(%)		양 허 세 율		
			UR이전	UR이후	UR이전	UR이후	감 축 률
선진국	계	680,580	94	99	6.3	3.9	39
	미 국	297,291	99	100	5.4	3.5	35
	E U	196,801	100	100	5.7	3.6	37
	일 본	132,907	89	96	3.9	1.7	56
	캐 나 다	28,429	100	100	9.0	4.8	47
	호 주	25,152	36	96	20.1	12.2	29
개도국	계	260,655	15	58	15.3	12.3	20
	홍 콩	115,549	1	23	0	0	0
	한 국	40,610	24	89	18.0	8.3	54
	터 키	32,804	0	73	25.1	22.3	11
	태 국	15,212	10	70	35.8	28.1	22
	인도네시아	12,603	30	92	20.4	36.9	0
	브 라 질	11,409	23	100	40.7	27.0	34
	말레이시아	11,301	1	78	10.0	9.1	9
	멕 시 코	1,988	100	100	46.1	33.7	27
	인 도	1,179	12	68	71.4	32.4	55

資料 : A. Hoda(1994. 4. 25), *Trade Liberalization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중에서 발췌정리

註 : 1) 상기 자료 중 선진국은 상위 5개국을, 개도국은 10백만불 이상 수입국을 대상으로 발췌 정리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며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주요 무역국가로 부상(1993년 교역 규모 13위)한 점에 비추어 우리 상품의 수출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경제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제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2. 韓國에 대한 輸入規制現況

한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 규제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입 규제를 발동하는 국가의 수가 많아지고, 그 대상 품목도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확장, 다양화되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수출이 주로 몇몇 선진국의 시장에 집중되었던 1990년대 이전에는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의해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가해졌으나, 1990년대 이후 우리 상품 수출 대상 국가가 다양화됨으로써 후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규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表 5〉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 이전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한 번이라도 발동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오스트리아, 페란드, 노르웨이 등 8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누질랜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필리핀, 대만, 브라

〈表 5〉 國家別 對韓 輸入規制(單位:件)

	1990	1991	1992	1993	1994. 9	
					규제 종	조사 종
미국	13	14	15	19	18	3
캐나다	10	8	7	7	9	—
E.U.	25	23	22	16	16	3
유럽 각국	4	3	3	3	3	—
호주	9	12	15	7	8	2
뉴질랜드	—	—	3	3	3	—
일본	10	10	8	8	8	—
멕시코	—	—	—	1	1	3
아르헨티나	—	—	—	—	1	3
인도	—	—	—	—	1	—
터키	1	1	2	2	2	1
필리핀	—	—	—	—	1	—
대만	—	—	—	—	2	2
브라질	—	—	—	—	—	1
에콰도르	—	—	—	—	—	1
페루	—	—	—	—	—	1
합계	72	71	75	66	73	20

資料：무역협회(1994. 6),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종류』 및 상공자원부 조사자료

註 : 1) 유럽 각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의 규제 건수를 카운트

〈表 6〉 主要 規制對象品目의 變化 推移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先進國	섬유류, 자전거용 타이어튜브, 양동이, 통조림, 방수고무화, 생사 등	칼라TV, 앤범, 석유시추장비, 활동판, 전화교환기 시스템, 니트로셀룰로스, 폴리에스터 직물, CDP, VCR 등	DRAM, 스텐레스, 용접장판, 와이로프, 전자저울, 플로피 디스크 등
開發國			PV제품, 폴리에스터 단섬유, 폴리에틸렌, 염화 비닐수지 등

資料：『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종류』 및 상공자원부 조사자료

질, 에콰도르, 페루 등으로 확대되었다.

〈表 6〉에서 드러나듯이 對韓 수입규제의 발동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주요 수출상품 내용의 변화에 따라 규제대상 품목도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 제품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제품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규제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表 7〉에서 나타나듯이

〈表 7〉 우리 나라에 대한 輸入規制의 形態別 推移

	1990	1991	1992	1993	1994. 9
수 량 규 제	41	36	31	17	17
가 격 규 제	29	33	42	47	54
반덤핑 관세	29	33	42	47	54
상 계 관 세	(1)	(1)	(1)	(2)	(2)
기 타 (특허권 침해)	2	2	2	2	2
합 계	72	71	75	66	73

資料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종류』 및 상공자원부 조사자료

註 : 1) 상계관세에 의한 규제 2건은 미국의 금속제 쇄사도구, 철강 판재류에 관한 것으로 반덤핑 관세도 부과되고 있어 반덤핑규제의 전으로 계산되었음.

2) 특허권 침해를 한 플라스틱백과 EPROM칩 등 2건은 수입배제명령을 받고 있음.

상무청과 수량규제는 1990년 41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4년 9월 현재 17건에 머물고 있다. 반면, 반덤핑 관세부과에 의한 가격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29건에서 1994년 54건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GATT체제하에서는 수량규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들이 반덤핑관세의 부과 조치를 남용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WTO체제하에서 세이프가드 제도의 활동 절차가 보다 명료해지고 각종 회색 조치가 철폐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수입규제 형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같은 가격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反덤핑 規制에 대한 向後 對應方案

본 장에서는 WTO체제하의 반덤핑 관세제도에 대한 한국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 대응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과 수출기업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기업 차원의 대응은 제조 전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세분화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5.1. 政府次元의 對應方案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WTO 반덤핑 현상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계속 논의가 예상되는 우회수출, 재심연장 등의 문제에 우리의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우리나라 경우도 우회수출등의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 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EU 등의 선진국의 반덤핑 관세제도의 법체계를 완전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깊이있게 파악함으로써 덤픽 제소시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② 역으로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국내 산업의 보호 기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자유화의 적극 추진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 정부 및 개별 기업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상대 수입국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정부내 담당 조직과 기능을 전문화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③ 금번 WTO 반덤핑협정의 특징중 하나는 덤픽 조사 및 산업 피해 조사가 매우 전문화되었다는 점이다. 정상가격, 수출가격의 산정, 원가 이하의 판매나 국내 산업의 대표성 등이 강화되고 세분화된 규정 이외에 각 조사 단계마다 공고, 통지, 홍보 등을 하여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④ 덤픽제도가 향후 상대 수입국의 보호 수단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수입국 산업의 실제 피해와 관련해서 사전 조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수입국 산업의 수입 물량, 가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WTO 반덤핑협정의 특징은 정부 역할의 제고로서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반덤핑 조사 개시시 해당국 정부에 홍보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해결 기구에서의 패널구성, 패널구성원의 파견 및 구성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5.2. 輸出企業次元의 對應方案

수출기업 입장에서 볼 때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받게 되면 수출 의지가 감소되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며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한 국가에서 제소 받으면 타 국가에서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제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수출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덤픽 제소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반덤핑 제소 전후에 따른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5.2.1. 反 덤픽 提訴前 對應方案

일단 덤픽으로 제소를 당하면 판정 결과가 무혐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인 손실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덤픽 체계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처음부터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가격 산정시 이윤 산정 기준, 판매비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실제 자료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회계장부 및 근거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둔다.

②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 장려로서 덤프마진율 2%, 수입 시장 점유율 3% 이하인 경우에는 덤프 조사가 종결되므로 이들 업체의 소규모 물량은 덤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원가 이하의 판매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발비와 설비 투자액이 큰 생산량 초기의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④ 우회 수출 덤프 방지 관세제도는 아직까지 최종 협상안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제품 차별화를 통하여 변형시키거나, 부품을 수출하여 제3국간에서 조립하여 수입국에 수출하거나,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수출 방안을 강구한다.

⑤ 비가격 전략의 활용으로 수입국 중간 유통상에 대해 비가격적 유인을 제공하여 가격이 인하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예를 들면, 수입상에게 동일 가격에 외상 거래를 허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⑥ 사전 교섭을 통해 일단 제소의 움직임이 보일 경우 외국 관계 기관 및 제소자 측과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사전의 타협을 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다.

5.2.2. 反덤핑 提訴後 對應方案

일단 덤프 제소를 당하고 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덤프에 의한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 내의 유능한 인력을 모아 전담반을 구성함과 동시에 덤프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무리한 일이다. 특히 함께 제소 당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 절약이나 자료 작성 등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덤프 조사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회사의 제반 자료들과 상호 모순이 없도록 철저히 비교 분석한 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일단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실제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예행 연습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도록 한다. 특히 실제 조사에서는 풍부한 전문지식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을 답변자로서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조사관과 피제소자 사이의 부정확한 언어 소통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피제소자에게 돌아오는 반면, 자료가 다소 불충분할 경우에도 구두 답변으로 무난히 위기를 극복하는 수도 흔히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6. 結 論

지금까지 반덤핑 관세제도의 경제이론적 배경과 종전의 GATT 1947 제 6조에 의한 1979년 반덤핑 협약의 규정과 금번에 개정될 GATT 1994년 제 6조 반덤핑협약의 규정을 상호 비교해보았다. 이어 세계 각국과 한국의 반덤핑관세 제도의 발동 현황을 살펴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반덤핑 관세제도는 주로 무역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유치 발전하려는 수입 규제책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제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해석과 운용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자의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성과 명료성이 부족했던 종전 반덤핑 협약을 개정하게 되었기에 수출국에는 유리하게 된 점도 있다. 향후 세계각국은 상대적으로 무역개방과 자유화추세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세양허폭이 확대되고 무세화 및 관세조화,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으로 반덤핑 관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덤플링제소에 의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보다 수출기업이 사전에 제소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 수입국의 반덤핑 관세제도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출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국 업계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유대관계를 맺어 제소전 협의로 제소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업종별 단체들이 정부와 긴밀한 보조관계를 가지고 덤플링제소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尙志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151-056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전화 : (02) 885-1068

팩스 : (02) 393-8001

參 考 文 獻

- 김기수(1995) : 『WTO와 반덤핑 관세, 정치·경제 법적 분석과 우리의 대응』, 세종연구소.
- 김신행(1988) : 『국제경제론』, 법문사.
- 김용일(1995) : 『WTO 세계무역기구 규정 해설』, 한국 무역 경제.
- 김인준(1989) : 『국제경제론』, 다산 출판사.

- 김지홍(1994) : "WTO 체제 하의 대응 전략," 『국제경영연구』 5, 한국국제경영학회.
- 삼일회계법인(1991) : 『Europe 공동체(EC)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 신유균(1995) : 『WTO 체제와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한국무역경제.
- 윤영각(1995) :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한승출판사.
- 이장로(1993) : 『국제마케팅론』, 무역경영사.
- 이춘삼(1995) : "반덤핑 관세 분야에 대한 UR협상 결과의 분석," 『무역학회』 20.1, 한국무역학회.
- 전창원(1995) :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무역학회』 20.1, 한국무역학회.
- 한국무역경제(1994) : 『UR의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 협정』.
- 한국무역협회(1989a) : 『일반 반덤핑 상계관세법 해설』.
- _____ (1989b) : 『호주 반덤핑 관세제도』.
- _____ (1990a) : 『대 EC 폴리에스터사 반덤핑 대응사례』.
- _____ (1990b) : 『알기쉬운 반덤핑제도』.
- Bhagwati, J. (1990): "Seventh Harry G. Johnson Memorial Lecture: Mutilateralism at Risk, the GATT is Dead, Long Live the GATT," *World Economy*, 13, 2, 152~155.
- Carlton, D.W., and J.M. Perloff(1994) :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New York, Hpaer Collins.
- Salvatore, D.(1993) : *International Economics*, 4th ed., New York, Macmillian.
- Stewart, T.P.(1991) :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Law: a Different Perspective," *Down in the Dumps*, Brookings Institution.
- Viner, J.(1923) : *Dump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